

의안번호	2210487
의 퇴 인	임광현 의원
회 답 일	2025.06.20.
추계번호	25E286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비과세 금액 및 납입한도 금액 인상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	비고		
1	안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	○ 비과세 한도 금액 인상				-		
		(단위: 만원)						
		현행		개정안			한도 변화	
		대상	한도	대상	한도			
		① 총급여 5천만원 이하	400	→ ①,② (④ 제외)	1,000		+600	
		② 종합소득금액 3.8천만원 이하(농어민 포함)		④ 혼인 7년 이내	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		1,000	+600 /+800
					6세 이하 자녀 1명		900	+500 /+700
					그 외		800	+400 /+600
		③ 그 외	200	→ ⑤ 15~34세 근로소득자(총급여 5천만원 초과)	1,000		+800	
				→ ③ (④,⑤ 제외)	500		+300	
1) 혼인한 날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)부터 7년 이내인 경우								
○ 납입한도 금액 인상								
- (현행) 연간 2천만원, 5년간 총 1억원								
- (개정안) 연간 4천만원, 5년간 총 2억원							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비과세 한도 금액을 가입자 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하고, 납입금액 한도를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 예상 (안 제91조의18)
 - 비과세 한도는 가입자 요건에 따라 현행 한도 대비 300~800만원 인상
 - (혼인 7년 이내) 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현행 대비 400/500/600/700/800만원 인상
 - (15~34세 근로소득자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) 800만원 인상
 - (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.8천만원 이하(농어민 포함)이면서 혼인 7년 이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) 현행 대비 600만원 인상
 - (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) 현행 대비 300만원 인상
 - 납입한도 금액은 1억원(연간 2천만원) 인상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혼인 7년 이내인 경우(6세 이하 자녀 수 별), 15~34세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각 요건별 ISA 가입 인원·가입금액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세수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